

[] 측정기기
[] 폐수배출시설 개선계획서
[] 수질오염방지시설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허가(신고)번호	제	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4일(검사기간 제외)
----------	---	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

사업자	사업장명					
	대표자					
	주 소 (전화번호:)					

사업장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	
	사업종류			주생산물		

개선계획	측정기기·폐수배출시설·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(예정)일					
	개선계획서 제출사유					
	개선완료·가동중단·위탁처리(예정)일			개선(가동중단·위탁)기간		
	부적정 운영명세	측정기기 및 시설명				
		규격			수량	
	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	항목				
		농도				
	폐수위탁처리	위탁처리방법				
위탁업체명			위탁처리량 m ³ /일			
예상평균 폐수배출량 m ³ /일			일일 가동 예상시간			

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·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세부 개선명세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	--------

작성요령

1. 폐수배출시설·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개선·변경 또는 보수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부 개선명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2. 공법 등의 개선으로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부 개선명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